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대응

I.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라는 거대한 물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물결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산업·경제·문화 등 각분야에서 정보화를 실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 풍요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고도정보화로의 변천은 사회 각부문에 획기적인 혁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종래 수천년간 내려온 전통적인 법규범들을 크게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외국에서는 새로운 정보법학이 연구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정보화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대응」의 측면에서 우선 당면된 과제를 다음과 같이 6개부문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추진 요소	법적 보완
– 정보산업 관련 요원육성	교육관계법·과학기술진흥법, 첨단기술육성법 등
– 하드웨어산업 육성	공업발전법, 정보처리촉진법(가칭), 신기술개발촉진법(가칭)
–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프로그램법,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정보처리촉진법 등
– 정보통신산업의 육성	전산망법, 방송법, 전기통신관련법 등
– 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법, 정보처리촉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정보화 역기능 방지	컴퓨터범죄방지법(가칭), 컴퓨터보전법(가칭),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에서 예시한 분야이외도 민·상법상 각종 법 를 행위 관계의 법제화, 노동관계법에서 근무시간 문제, 산업재해방지등과 그 밖에 금융·세법관계에서 금융지원·세제상 우대조치 등등 종합적인 법제의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정보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대응

1. 정보산업관련 전문 요원육성

경제·산업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수한 노동력, 풍부한 자본,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이 고도정보화社会의 기반조성에



申 珥 澈
법제처 법제연구관

서 더욱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정보산업분야 전문기술요원의 확보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1987년에 「고도정보화사회에 대응하는 인재육성계획」을 수립하면서 2000년 대에 가서는 약100만명 정도의 기술요원(소프트웨어부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현재 매년 5천 명이상의 요원육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소프트웨어공급력 개발사업 추진 임시조치법」(1989년 6월28일, 법제60호)을 제정하고 특별회계(산업투자특별회계·통신성일반회계·노동보험특별회계)에서 매년 거대한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기술요원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 1987년에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등에 의한 자금 지원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문기술요원 육성이 어려운 형편이고,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다수 배출되고 있으나, 숫자으로 부족하고 현장경험이 적어 기술적인 면에서 뒤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전문요원을 대량 배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농촌등 지방학교에 일정의 규모의 교육용컴퓨터가 공급되고 있으나 운용 기술요원의 부족으로 전시품에 지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자라나는 2세에게 전산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성공적인 정보화는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행정전산망이 가동되어 전국으로 네트워크화되고 교육기관은 물론 읍·면·동 등 지방 기초행정기관까지 전산전문요원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을 개정·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2. 소프트웨어의 상품화 문제

소프트웨어가 막대한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개발되었다 해도 이에 상응하는 고품질의 상품으

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미 1986년 12월에 제정되어 4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으나 소프트웨어가 상품으로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개발자(또는 공급자)나 이용자(최종사용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많은 미비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여기서 상세히 지적할 수는 없다.

일본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용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개발자는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이용자는 보다 적정한 가격으로 위험부담 없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신용보험금고에서 프로그램품질을 심사·보증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험대상프로그램」으로 지정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중소기업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전산화를 촉진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자유로운 정보의 수집·처리

정보화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컴퓨터기술과 통신기술의 발전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이라고 보겠다.

즉 데이터베이스산업이 발전되지 않고서는 정보의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정보화는 기대할 수 없다.

DB산업발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의 독점을 방지하고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하는 「정보공개제도」가 법제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과제로서 세계 주요국가들은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고, 국가기밀이나 대외비 정보를 제외하고는 국민에게 자유로운 정보의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안보상 특수한 여건을 참작하여 대폭적인 정보의 공개는 곤란하겠지만 정보의 지나친 독점현상을 배제하고 국민이 자유롭게 접

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정보화를 보다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정보보호의 제도화

정보화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강조되고 있는 것은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다. 프라이버시보호의 필요성을 이미 1970년대부터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 소개할 필요가 없겠으나, 다만 세계 주요국가가 거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최근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총리훈령(250호)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법제정에 앞서서 국민 모두가 정보화사회에서 지켜야 할 「정보윤리」가 확립되어야 하며, 민주시민으로서 타인의 기본적 인권을 우선하여 존중할 줄 아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민학교·중고등학교 등 교육과정에서 정보윤리에 관한 교재를 신설하고, 어릴때부터 국가기밀·개인정보보호 등 기본적인 정보윤리교육이 강화해야 한다.

5. 컴퓨터범죄 방지 등 시스템보안 대책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정보의 처리가 빈번하게 악용되거나 어떤 불순한 행위로 인하여 시스템의 신뢰성·정확성이 상실될 경우 또는 파괴·정지될 경우 정보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

컴퓨터시스템의 악용, 불법접근, 파괴등의 행위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등에 손상을 입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협하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까지 파괴하여 정보화의 역기능으로서 가장 우려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미국·서독·일본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대부분 컴퓨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입법이

이미 '80년대에 마련되었고, 최근에 영국에서는 「1990년 컴퓨터부정사용 처벌법」('90. 6. 29제정)이 공포되었다.

이 법은 컴퓨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처벌대상으로 ①컴퓨터부정조작, ②컴퓨터시스템 파괴, ③컴퓨터사기, ④컴퓨터불법사용 및 접근, ⑤데이터손괴·유출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91년 정기국회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컴퓨터범죄처벌에 관한 입법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III. 맷음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고도정보화사회의 성공적인 실현은 어떤 특별한 입법만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정보화 또는 정보산업의 성장발전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기존의 법령이나 제도를 보다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국민 모두에게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윤리」가 함양되어야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선진국으로서 풍요로운 민주·복지사회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고도정보화社会의 실현을 우선과제로 삼고, 종합적인 시책이 담긴 「정보화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한편, 국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정보화실현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도록 경제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